

##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휴게실 관리 및 운영 지침

제정 2015.08.10.

개정 2018.05.02.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휴게실 및 그 시설물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**제2조(장소, 이용시간 및 이용자)** ① 학생휴게실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306호(여학생휴게실), 15동 308호(남학생휴게실), 15동 321호(장애우휴게실)에 설치한다.

② 학생휴게실은 15동이 개방된 시간 중에 운영한다. 다만 시설의 개보수나 보안 등을 위하여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.

③ 학생휴게실의 이용자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, 일반대학원 법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

**제3조(관리자)** ① 학생휴게실의 청결한 운영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봉사장학생을 둔다.

1. 여학생휴게실(15동 306호): 여학생휴게실 봉사장학생 1인

2. 남학생휴게실(15동 308호) 및 장애우휴게실(15동 321호): 남학생휴게실 및 장애우휴게실 봉사장학생 1인

② 봉사장학생은 학생휴게실의 청결을 유지하고 비품의 정리·정돈 및 시설물 관리 감독을 한다. 특히 화재예방을 위한 전열기구 관리를 철저히 한다.

③ 봉사장학생은 매 학기 선발하며 업무 수행의 대가로 매달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급받는다.

④ 봉사장학생은 별표 1의 비품대장을 비치하여 효율적으로 보관하는 물품을 관리하고 물품이 망실, 훼손되었거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변상책임 및 물품 교체)** 원장이 제3조제4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망실자 또는 훼손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고, 망실자 또는 훼손자를 알기 어려우나 물품을 교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의 예산으로 물품을 구비한다.

**제5조(이용자 준수사항)** 학생휴게실 이용자는 휴게실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

1. 고성방가, 음주, 흡연, 도박

2. 인화물질, 위험물, 기타 법으로 소지나 운반이 금지된 물건의 사용 또는 반입

3. 전열기구의 전원을 끄지 않고 퇴실하는 행위

4. 시설물의 임의 이동 및 파손

5. 봉사장학생 또는 직원의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6. 기타 휴게실 사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안전을 해하는 행위

**제6조(건의사항 수렴)** 학생휴게실 이용자가 휴게실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5동 1층 유민홀 내 건의함을 이용하거나 봉사장학생을 통해 학교에 건의한다. 원장은 그 건의사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한다.

**부칙 <2015.8.10.>**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2018.5.2.>**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